

2. 預金 保險 制度 導入

- (의의)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기관이 일정 원칙에 따라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임
- (내용)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1월부터 시중은행, 지방은행, 특수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들의 예금, 적금, 부금 및 원본보존 금전신탁 잔액에 대해 해마다 0.02%의 보험료를 받고 1인당 2,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예금보험업무를 시행함
- (평가)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보호 및 규제가 명시적인 예금보험제도로 전환됨으로써 시장의 감시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은행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완화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에서의 시장기능의 활성화가 예상됨
- (과제)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은행경영의 부담 문제의 완화와 경영 위험에 따른 차등 보험료율 적용이 향후 과제임

예금보험제도는
금융기관이 예금
인출요구에 응하
지 못할 경우 예금
보험기관이 예금
을 지급해 주는 제
도

- 예금보험제도의 의의
 -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부실 등의 이유로 예금자의 예금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을 경우, 예금보험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정해진 원칙에 따라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임
 - 이 제도는 예금의 지급 보장을 통해 대량 예금인출에 따른 금융기관의 연쇄적 파산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짐
-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배경
 - 그동안 정부는 암묵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여 왔다고 평가됨
 - 정부가 은행의 자금 조달 및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인해 은행의 건전성에 책임을 지게 되고 이에 따라 정부는 결국 은행의 도산을 방지하고 예금자를 암묵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됨
 - 정부의 보호 및 규제는 책임경영의식 부족 등의 도덕적 해이(moral hazard)를 발생시켜 은행의 경

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

- 쟁력 저하와 이로 인한 금융산업의 낙후를 초래
-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 속에서 국내외 금융기관간에 경쟁이 치열해짐
- 은행의 부실화 우려가 높고 나아가 예금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코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 취지임

예금보험업무는 97년부터 실시

○ 예금보호제도의 도입 경과

- 95년도 정기국회에서 "예금자보호법"이 제정되었고, 이에 따라 운영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96년 6월 1일자로 발족하게 되었으며
- 보험료 수납, 은행 예금지급 불능시 보험금 지급 등 예금보험업무는 97년 1월 1일부터 개시하게 됨

<예금보험제도의 주요 내용>

| | | |
|---------|---|--|
| 보호대상 예금 | 예금,적금,부금 및 원본 보전 금전신탁 | 단, 외화표시예금, CD 등 채권 유사 상품, 정부 예금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|
| 대상 금융기관 | 시중은행(15개), 지방은행(10개), 특수은행(7개), 외은지점(71개) | 은행간 형평성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은행의 의무가입 |
| 보험료율 | 연율 0.02%의 단일 요율 | 객관적 평가 기법의 미비로 제도 도입 초기에는 동일 요율로 하되, 향후 보험료율의 차별화를 추진함 |
| 보험금 | 1인당 2천만 원 한도 | 98%에 달하는 소액 예금자가 보호됨 |

○ 예금보험공사의 운영

-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합 계리
- 기금의 수입: 정부의 출연금, 은행으로부터 받는 보험료, 기금의 운용수익, 정부·한은 차입금 등
- 기금의 지출: 보험금 및 가지급금, 부실은행 합병·

무자본 특수법인
인 예금보험공사
형태로 운용

- 인수 지원금, 공사의 운영 경비, 차입 상환금 및 그 이자 등 모든 지출
- 운영기관: 예금보험공사(무자본 특수법인)
-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
 - 은행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납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예금보험업무
 -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
 - 은행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자료의 징구
 - 부실은행의 합병·인수를 알선하고 자금을 지원

정부의 규제·보호
에서 시장의 규율
기능을 강화하는
방향으로 금융산
업 재편

○ 평가 및 과제

-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은 과거 정부의 규제 및 보호에서 시장의 규율(market discipline)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산업을 재편하는 것으로 평가됨
 - 예금자의 경우 예금의 부분보장에 따른 손실위험으로 은행선택에 있어 안정성과 건전성을 고려하게 되어 시장감시기능이 강화될 것임
 - 은행경영자의 경우 기존의 정부 보호하에서는 고수익·고위험 사업에 투자가 가능하였지만 은행의 파산과 정리를 전제로 하는 제도하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덜 발생할 것임
 - 예금보험공사는 보험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은행을 조기 발견·정리하여 타은행에 인수시키려 할 것이므로 은행 경영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을 제고시킴
- 예금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은행의 보험료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
 - 보험기금에 납부되는 보험료를 총당금으로 해석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
- 위험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실시 방안의 모색
 - 고정보험료 적용에 따른 도덕적 해이, 즉 고수익·고위험 추구 현상이 심화될 경우 보험료 차등화를 실시해야 할 것 (김 성 수)